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88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2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관 련 부 서 : 총무과

□ 개정이유

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확대 시행에 따라 2004년부터 교육행정기관의 토요일무제 실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, 기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제명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 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로 함(안 제명).
- 교육감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5조의2 제1항).
- 토요일무제 및 전일근무제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(안 제15조의2 제2항).
-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함(안 부칙 제2항).

□ 개정조례안 : 붙임

□ 참고사항

- 신·구문 대비표 : 붙임
-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”로 한다.

제1조중 “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”을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5조의2(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 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.

②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개정)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제명 “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”를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”로 한다.

2. 제1조중 “충청북도교육감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”을 “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기관의 지방공무원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(이하“공무원”이라 한다)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15조의2(토요일전일근무제) ①교육감은 국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부서에 대하여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</p> <p>②토요일 전일 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</p>	<p><u>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. . . 충청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</p> <p>제15조의2(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) ①교육감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휴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 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②토요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.</p>

관계법령발췌서

지방공무원법[법률 제6786호]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